

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93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성준, 김용일,
박강산, 박 석, 박승진,
박영한, 봉양순, 서상열,
신복자, 아이수루, 유만희,
, 유정인, 윤종복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 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

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3. “유해약물”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위험성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방교육계획의 수립) 교육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

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계획(이하 “예방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예방교육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책 발굴
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
5.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6. 교육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, 구청,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

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